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스웨덴의 교육적 보육(Pedagogical Care)*

한 유 미** · 김 희 영***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육 일변도인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시하는 스웨덴의 교육적 보육을 소개함으로써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소규모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문헌연구 및 스웨덴 현지방문과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오랜 기간 가정보육으로 불리던 교육적 보육이 일반 보육의 역사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적 보육의 개념 및 이용자들의 특성, 관련 법규 및 전달체계, 보육료 등의 행·재정, 교육적 보육이 갖고 있는 교육철학 및 질 관리를 중심으로 한 운영 실제 등을 소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적 보육은 공보육으로서의 입지 확보, 최근 명칭의 변화에 반영된 교육적 기능 강화, 아동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운영 등의 특징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시설 위주 보육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보육정책 촉구,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추진, 시설보육과 차별화된 수퍼비전 및 자조모임 지원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육정책 입안 및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주는 시사점

* 이 논문은 2021년 호서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20210477).

**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주저자)

*** 경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신저자)

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아동권리, 가정보육, 교육적 보육, 스웨덴, 가정보육사

1. 서론

권리는 성인과 아동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아동은 발달적 특수성으로 인해 성인에게 삶이 통제되며 인격체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오곤 하였다(나원정, 장민영, 이승연, 2015; 이은경, 2018). 이에 UN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존중의 중요성을 호소하며 19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제정하고,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생존 및 발달의 원칙, 의사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가지 기본 권리를 천명하였다(UNICEF, 2022). 또한 국가인권위원회(2021)는 UN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7호를 통해 아동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 경험과 학습을 위한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양육, 정서적인 돌봄과 인지적 지도가 특히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은 유아기에 대한 법률과 정책 및 프로그램 안에서 가장 잘 계획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권리란, 아동이 발달 특성에 따른 적절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권리를 지키고 누리는 것이라고 하겠다.

세계에서 아동과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일컬어지는 스웨덴의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진심으로 존중받고 사회의 보살핌을 받으며 부모에 의해 잘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육아정책연구소, 2006). 이러한 권리가 아동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동의 복지와 안녕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스웨덴의 오랜 신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스웨덴은 이미 1900년대 초부터 미래의 성인인 유아의 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스웨덴의 교육학자 엘렌 케이(Ellen Key)는 그의 저서 『어린이의 세기』(1900/2012)에서 아동은 튼튼하게 태어날 권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정서적·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유희나 오락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후 스웨덴은 UN 총회에서 결의한 아동권리를 유보 없이 비준하며 아동권리 지지에 국제적으로 앞장섰다(육아정책연구소, 2006). 스웨덴은 UN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이래 오랫동안 이와 관련된 국내법을 개정해 왔으며, 입법자는 교육법 등과 같은 국내법 작성 시 아동권리협약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였다(skolverket, 2022a). 아동권리협약은 2020년 1월 1일부터 스웨덴 법의 일부가 되었으며, 아동 옴부즈맨(Ombudsman)을 통해 당국, 지방자치단체, 카운티 의회 및 지역, 학교 등이 아동권리협약과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skolverket, 2022a)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웨덴은 일찍이 아동권리로서의 유아교육·보육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였다. 스웨덴은 1943년 보육시설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래 1975년 모든 6세 아동에게 연간 주당 15시간 무상보육을 제공할 책임이 지자체에게 있음을 명시한 보육법(Preschool Act)을 제정하였다. 무상보육 권리는 2003년 모든 4~5세에게도 적용되고, 2010년에는 모든 3세 아동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스웨덴에서는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 보육제공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도입하는 데 의명분이 되어 보육에 대한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DICE Database, 2005). 스웨덴 정부 주도의 공보육 추진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해결과 여성 취업률 증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 보장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보육이 일하는 부모의 권리가 아닌 아동의 권리임이 강조되면서 비취업 부모들의 자녀들도 보육받을 평등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육아정책연구소, 2006). 거의 완전한 보육 수혜율에 도달한 오늘날의 스웨덴 보육은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입장을 초월하여 모든 아동에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한유미, 오연주, 권정윤, 강기숙, 백석인, 2005). 이와 같이 부모의 권리 중심에서 아동의 권리 중심으로 보육 개념이 변화한 것은 과잉보육을 방지하기 위해 무상보육의 기준을 종일제가 아닌 반일제(하루 3시간)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스웨덴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육 제도 및 정책을 논의할 때 모범

사례로 자주 인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주로 미국이나 일본을 보육 모델로 삼아왔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스웨덴의 보육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한유미, 2013).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신동주, 2006; 신동주, 2015; 양옥승, 2014; 이신영, 2015; 한유미, 2013)가 스웨덴과 다른 나라의 보육제도를 비교하거나 프리스쿨(preschool)이라고 불리는 시설보육에 초점을 두고 탐구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정보육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한유미, 2006)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보육정책 역시 시설보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다변화되는 사회에서는 획일적인 시설보육보다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유형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선택 권리를 보장하는 보육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발달 특성상 대규모의 시설보육보다는 가정과 비슷한 소규모의 가정보육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가정보육은 부지매입이나 건축비 등이 필요 없어 보육재정의 측면에서도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보육은 family day care(호주, 일본), family child care(미국, 캐나다), childminding(영국, 웨일즈, 북아일랜드, 에이레, 스코틀랜드), home-based care(뉴질랜드), 가정어린이집(한국) 등 국가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에는 ‘family day care’라고 부르다가 2009년부터 ‘pedagogical care’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또한 가정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보육사의 경우에도 educator(호주, 뉴질랜드), childminder(영국, 웨일즈, 북아일랜드, 에이레, 스코틀랜드), child day care person(독일), family child care provider(캐나다, 미국), 보육교사(한국)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childminder(dagmamma)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Davis, Freeman, Doherty, Karlsson, Everiss, Couch, Foote, Murray, Modigliani, Owen, Griffin, Friendly, McDonald, Bohanna, Corr, Smyth, Morkeseth, Morreaunet, Ogi, Fukukawa, & Hinke-Rahnau, 2012).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이 가정보육을 교육적 보육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과거 보건사회부에서 주관하던 유아교육과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업무를 1996년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로 이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가정보육에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교육적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은 2013년 기준,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전체 등록아동의 9.6%를 차지하나, 이용자수는 이전년도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5). 전반적으로 높은 시설 보육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보육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영아 보육에 대한 신념, 아동을 위한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적 보육 대안으로서의 선택권 등이 충족되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스웨덴의 교육적 보육은 만인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아동에게 더욱 강력히 적용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교육적 보육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보육유형은 가정어린이집이다. 우리나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은 2020년 기준, 어린이집 이용 전체 아동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20), 현재 높은 폐원율과 운영난을 겪으며(박범천, 2022) 영유아 돌봄 공백을 초래할 위험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많은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집단인데, 이는 소규모로 인한 재정적 취약함과 전문성이 낮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영아보육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온 가정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권리 관점에서 성장해 온 스웨덴의 교육적 보육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 교육적 보육의 발달 과정, 행·재정, 일반적 특성, 운영의 실제 등을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소개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육정책 및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스웨덴 교육적 보육의 발달 과정, 행·재정을 살펴보고자 국내·외 논문, 연구보고서,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교육적 보육의 일반적 특성, 운영의 실재를 살펴보기 위해 스웨덴 예테보리 지자체의 교육적 보육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스웨덴 교육적 보육의 발달 과정

2.1.1 1930년 이전 : 보육의 발아기

스웨덴의 대표적인 보육 형태인 프리스쿨(preschool)은 19세기 말, 빈곤 아동을 위해 교회나 자선단체가 운영하던 보육시설과 중산층 아동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유치원이라는 서로 다른 전통에서 출발하였다. 초창기 보육시설의 목적은 위탁가정의 대안으로, 대부분이 편모인 가난한 가족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어머니와 떨어져 새로운 가족과 사는 위탁가정은 아이들이 주중에는 위탁모의 집에 있지만 생물학적 부모와 계속 사는 위탁가정 보육(foster daycare home) 또는 교육적 보육의 전신인 가정보육(family day care homes)으로 점차 대체되었다. 위탁가정, 가정보육, 보육시설은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공통적인 설립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20세기 전반에는 빈곤 완화를 위한 개혁이 최고의 정치적 목표였고, 공보육의 발달도 아동 수당이나 급식 제공과 같이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Gunnarsson, Korpi, & Nofdenstam, 1999).

2.1.2 1930~1945년 : 초창기의 보육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공공 당국이 아동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보육시설의 자선적 성격이 변화하고, 빈곤의 오명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Pestoff & Strandbrink, 2002). 예를 들어, 사회민주주의 정치가 미르달(Myrdal)은 모든 아동에게 보육이 제공되고,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동일한 발달 기회가 주어지고, 지자체는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기금을 받아야 하고, 국가는 교직원을 훈련하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보육의 특성(장점, 단점, 방법, 이유)과 공보육 제공을 위한 사회의 책임은 오랫동안 논쟁 주제가 되어 왔다. 최초의 국가위원

회인 인구위원회(Population Commission)에서는 보육시설보다 좀 더 짧은 시간 운영되던 놀이학교(play school)와 아동 자신의 집을 결합한 것을 이상적인 보육형태로 권장했다. 이들의 입장은 여성 노동력의 필요성 때문에 보육 시설이 필요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이었다(Korpi, 2016). 심지어 보육 시설에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기 시작한 1944년에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보육시설 확장 계획에 반대했는데(Nilsson, 1997), 이는 아동이 어머니의 취업 때문에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2.1.3 1945년~1972년 : 공보육의 기초

2.1.3.1 여성의 위치 : 가정 대 직장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여성의 노동자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가족정책의 개혁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여성취업 및 보육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 듯했다. 1945년 출산율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위치는 가정이고, 가정은 여성이 돌아가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1949년 의회는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정부의 법안에 반대하여 가정보육을 확대하고, 미혼모를 위한 사회적 자원으로 보육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논쟁이 지속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보육시설은 너무 비싸고, 교직원도 너무 많으며, 보다 중요하게는 보육시설이 과연 아이들에게 이로운 것인가 하는 점이였다. 많은 여성 국회의원들이 여성취업을 반대했던 남성 국회의원들을 비판했지만, 1960년대까지는 어머니가 자녀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즉, 보육은 정당의 이데올로기 노선보다 성별과 세대별 문제였던 것이다(Korpi, 2016).

2.1.3.2 보육시설 대 가정보육

보육시설에 반대한 것은 비단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보육시설을 대개 문제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시설로 여겼다. 이들은 보육시설을 고아원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과거 위탁가정보육으로 불

렸던 가정보육을 권장하였다. 가정보육은 좋은 엄마가 있는 가정 같은 분위기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이나 하는 이슈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다(Korpi, 2016).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당시 가정보육 아동보다 유치원의 전신인 레스콜라(leskola)에 다니는 아동이 더 많았다(Skolverket, 2000). 아울러 1960년 보육시설의 정원은 10,000명으로 10년 전보다 불과 500명이 늘어났을 정도로 확대 속도는 더디었고, 가정보육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Pestoff & Strandbrink, 2002; 한유미 외, 2005). 1944년의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이어, 1946년에는 몇몇 주요 도시에서 가정보육에도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도입되었다. 1968년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가정보육사를 채용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받았는데, 이때 가정보육사는 노조와 정부의 협약에 따라 채용되었고, 지자체는 가정보육사의 집을 검사하였다. 이후로는 더 이상의 정부의 규제는 없었고, 지자체가 가정보육사의 자격, 훈련 및 지원을 결정해왔다(Mooney & Statham, 2003).

2.1.3.3 1968년 현대적 아동기를 위한 보육설치위원회

1960년대 여성취업이 증가하고 보육시설 확충이 요구되자 1968년 보육설치위원회(Barnstugeutredningen)라는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당시 프뢰벨 유치원의 정신(예. 수공예)을 계승한 5~6세 아동을 위한 놀이학교는 부모들의 선호를 받았지만, 사정을 통해 싱글맘 자녀들이 다녔던 보육시설은 여전히 필요악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위원회의 목적은 아동을 위한 활동에 민주화를 가져오고 동등한 성장 조건을 만드는 진보적인 교육을 도입하는 것에 있었다. 이들의 제안 중 하나는 교직원은 팀으로 일하면서 아동에게 민주주의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가정보육사가 종종 유아교사에 종속된 보조자로서 일하던 과거의 업무 분배를 타파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나아가 위원회는 빈곤구제와 같은 보호 또는 고소득 부모의 자녀를 위한 교육 활동 등과 같은 구시대적 관점은 모든 아동에게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단일한 형태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보육시설과 놀이학교를 프리스쿨로 통합하고자 했다. 위원회는 가정보육의 역할도 점검하였는데, 가정보육을 프리스쿨이 확장되는 동안 프리스쿨을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했

다. 이 무렵에는 사립 가정보육사가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많은 지자체에서 가정보육을 운영하기 시작했다(Korpi, 2016).

2.1.4 1970년대 : 공보육의 확대

지자체의 성장 및 세수 증가는 공보육 확대의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되었다. 초창기에는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의 분담 비율은 낮았지만, 1970년대에는 정부 보조금이 운영비의 45%를 차지할 만큼 엄청나게 증가했다. 지자체의 분담 비율도 비슷했고, 부모의 분담 비율은 10% 정도였다. 또한 1975년 시행된 최초의 법제화, 즉 유아교육법으로 인해 6세아는 연간 525시간 무상으로 프리스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포괄적인 용어인 ‘프리스쿨링’에는 가정보육도 포함되었다. 이 법은 보육을 가정과 긴밀히 협조하여 아동의 전인적인 인성발달과 신체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향후 5년 내에 보육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한유미 외, 2005).

취업모가 보육시설 정원보다 훨씬 빨리 증가함에 따라 1976년 정부와 지자체 연합은 5년 안에 보육시설 정원을 100,000명 확대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가 끊임없이 보육시설을 설립했지만 이에 비례하여 대기 아동도 많아졌다.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아동은 비공식적인 보육 부문 즉, 사립 가정보육사의 돌봄을 받았는데, 이들은 지자체에 고용되어 훈련을 받고 급여를 받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가정보육사라는 합법적인 직업으로 바뀌었다. 10년간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33,000명에서 135,000명으로, 가정보육 이용 아동이 32,000명에서 125,000명으로 유사한 증가 양상을 보였다. 즉, 1977년 공립보육을 받는 아동 중 47%가 가정보육 이용 아동이었을 정도로 가정보육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Korpi, 2016; Mooney & Statham, 2003). 그러나 가정보육사들에 대한 수퍼비전(supervision)과 지원이 부족하여 가정보육사들끼리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었다. 가정보육사들은 서로 모여 보육 아동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는 자조 모임을 만들었다. 협력 아이디어는 공식문서(Statens Offentlig Utredning: SOU, 1981)와 1981년 창간된 가정보육 잡지를 토대로 하였다. 잡지를 통해 가정보육사들과 이들의 수퍼바이저들은 국내·외의 새

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Mooney & Statham, 2003).

2.1.5 1980년대 : 사립 대안

보육시설의 공립화(지자체화)는 지자체 자체와 노동조합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고, 교직원들 또한 좀 더 안전한 근무 조건을 얻기 위해 공립화를 원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비사회주의 정당들은 사립 보육이 더 경제적이며 우수할 수 있음을 부각시켰다. 보육은 전국적으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였고, 민간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다. 기업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모협동조합 형태로 직원을 위한 보육시설을 시작했다. 당시 부모들에게는 사립 부모협동시설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Pestoff & Strandbrink, 2002). 시민당 정부는 민영화와 이윤 추구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설립의 자유’ 문제는 정부와 야당 간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의 또 다른 이슈는 취업이나 학업 중인 부모의 자녀에게 보육을 완전히 보장해주기 위해 보육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1985년에 UN 아동권리헌장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가치와 기회를 부여하는 인본주의 관점과 철학에 기초한 ‘모든 아동을 위한 프리스쿨’이라는 역사적인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는 부모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의 입장에서 모든 아동이 가족의 상황과 상관없이 보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권리는 보육시설 뿐 아니라 가정보육에도 적용되었다(Broström, Sandberg, Johansson, Margettd, Nylande, Frøkjær, Kieferleg, Seiferth, Rothi, Ugastej, & Vriniotik, 2015; Korpi, 2016). 1988년 가정보육을 받는 아동의 수가 최고점(172,000명)을 찍고, 이후 시설보육의 확장으로 가정보육 이용 아동의 수나 비율은 감소했다(Mooney & Statham, 2003).

2.1.6 1990년대 : 교육부 이관

과거에는 정부가 프리스쿨을 세부적으로 규제(교직원 비율, 위치 등)해 왔지만, 1991년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주의 증진을 목표로 프리스쿨, 학교, 사회

복지에 관한 책임이 지자체에 이전 되었다.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1991)의 개정으로 지자체는 의사결정 위원회를 보다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 보조금 시스템의 변경(지정교부금에서 일괄교부금)이 수반되었다(Jönsson, Sandell, & Tallberg-Broman, 2012).

1996년 국무총리 페르손(Persson)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프리스쿨에서 향상된 학교로(Preschool to improved school)’라는 정책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8년 보육의 주무부처가 보건사회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고, 국가 수준의 프리스쿨 교육과정(Lpfö 98)이 만들어졌다.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수정을 거쳤다. 첫째, 교육과정이 개인의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프리스쿨 기존의 교육학적 전통이나 문화와 맞지 않으므로 달성(achieve)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추구(strive)해야 할 목표를 기술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둘째, 유아교사와 작업팀에 관한 것인데, 많은 논의 끝에 교육과정은 유아교사뿐 아니라 가정보육사 등 모든 작업팀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가정보육은 국가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국가 교육과정은 가정보육에도 지침을 제공했다. 이와 같이 프리스쿨은 오랫동안 갈망했던 ‘교육’의 지위를 획득했고, 교육과정은 교직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물론 교육과정이 유아교사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유아교사들과 유아교사 노조가 더 좋아했을 수도 있겠지만, 가정보육사들은 자신들이 작업팀의 일원이 되고, 교육과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할 정당한 역할이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Korpi, 2016).

공립 프리스쿨과 레저타임센터가 팽창함에 따라 가정보육의 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그리고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원래 가정보육은 0~12세를 대상으로 했지만, 방과후 레저타임센터가 활성화되면서 학령기 아동은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육아휴직이 가능한 1세 이하와 유아학급을 다니게 된 6세로 인해 가정보육 이용 아동 수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1990년대 말 연령별 가정보육 등록률이 가장 높았던 2~3세의 공보육 등록률은 12~13% 정도를 차지하였고(한유미 외, 2005), 가정보육 전체 이용률도 공보육 이용률의 10%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작은 크기와 가족 같은 분위기 때문

에 취학 전까지는 자녀를 가정보육에 맡기는 것을 선호했다. 가정보육의 분포는 지역차가 상당히 커서 인구 밀집 지역보다는 시골과 지방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Mooney & Statham, 2003; Pestoff & Strandbrink, 2002).

2.1.7 2000년대

스웨덴에서 총 보육비용 중 공적 기금의 비율이 높고 부모 부담률이 낮은 것은 높은 조세율과 더불어,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보육료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한유미, 2010). 이러한 배경에서 2002년 고정금액과 가정소득의 비례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보육료로 책정하는 보육료 상한제가 도입되었고, 이는 프리스쿨 뿐 아니라 가정보육이나 유아학급, 레저타임센터에도 적용되었다. 그 결과 부모 부담률은 감소했지만, 공급자는 부모가 납부한 보육료와 실제 보육비용간의 격차가 증가했음에도 과거처럼 보육료를 인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해결되었다(한유미, 2013).

2006년 중도우파 정부의 집권으로 2009년 ECEC 설립의 자유가 도입되었다. 같은 해 공립시설들 간의 경쟁 유발, 부모의 선택권 보장과 보육의 다양성 증가를 위해 일부 보수당 집권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보육바우처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한유미, 2009). 이로써 국가 교육과정에 명시된 목표에 부합하고, 지자체의 요구 조건에 맞는 질과 안전이 유지되는 한 공립이든 사립이든 아동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Jönsson, Sandell, & Tallberg-Broman, 2012). 가정보육의 경우 보육사 자신의 아이에게도 재정 지원이 되었지만, 보육자의 자녀가 서비스에 등록된 다른 아동보다 많아서는 안 되었다(Korpi, 2016) 이와 동시에 전통적인 가정보육보다 보다 폭넓은 유형의 교육 및 보육 활동을 제공하라는 의도에서 법적으로 ‘가정보육(family day care)’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교육적 보육(Pedagogical care)’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Naumann et al., 2013). 1988년 172,000명이던 이용 아동 수는 마지막으로 가정보육이라는 명칭으로 통계를 냈던 2009년 22,114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sverigies officiella statistik).

2.1.8 2010년대

1998년 최초로 만들어진 국가 수준의 프리스쿨 교육과정이 2011년 1차 개정된 후 2018년 다시 개정되었다. 언어, 수학, 과학, 기술에 대한 강조는 이미 2011년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2018년 교육과정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사회, 경제, 환경), 복지, 놀이가 근본이 된다는 점이 추가되었고, 유아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었다. 전통적으로 스웨덴 프리스쿨 교육과정은 교수(teaching)를 강조하지 않았으나(Bennett & Kaga, 2005), 점차 교육이 강화되는 추세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2011년도 발효된 새로운 교육법은 모든 프리스쿨에는 자격을 갖춘 유아교사가 있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2012년 프리스쿨 교사 자격증이 완전히 도입되고, 인증된 유아교사만이 교사로 종신 고용될 수 있게 되었다. 프리스쿨에서 교육적 책임이 있던 유아교사에게 명확한 작업 지침이 제시되었고, 가정보육사를 포함한 기타 교직원들도 아동의 보호, 발달, 학습을 도움으로써 프리스쿨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유아교사, 가정보육사 등 작업팀 구성원들은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Korpi, 2016).

또한 교육과정 개정으로 2009년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리스쿨 부양(Preschool Boost)’이라는 현직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6억 SEK의 예산으로 수천 명의 원장(30학점, 20주), 유아교사(15학점, 10주), 가정보육사(5주)가 각기 대학 수준과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이들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분야, 특히 자연과학과 기술, 평가뿐 아니라 언어 및 수학의 발달 분야에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제공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말에 끝났으며, 새롭고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한유미, 2013; Korpi, 2016).

2.2 스웨덴 교육적 보육 관련 행·재정

2.2.1 관련 법규

교육법에 따르면 교육적 보육은 취학전 및 학령기 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이다. 따라서 다른 보육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청의 관할을 받는다. 만약 부모가 프리스쿨이나 레저타임센터 대신 교육적 보육을 원한다면 지자체는 교육적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적 보육은 교육법(특히 25장)에 의해 실시된다. 교육법에 의하면 교육적 보육을 위한 공간은 목적에 합당하여야 하며, 보육 제공자는 일정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나 보육에 필요한 경험이 많아 양질의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 보육 내용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집단의 크기는 보육 내용에 적절한 크기여야 한다. 교육적 보육은 주무부처가 보건사회부에서 교육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skolverket, 2022b), 질적인 보육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과 규모 확보, 경험 또는 훈련을 받은 가정보육사에 의한 보육 제공 등을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게 되었다.

교육적 보육은 공식적인 보육 유형이지만, 국가 교육과정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대신 국가 교육과정을 기초로 만들어진 국가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사실 국가 교육과정이 시설보육의 교직원에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교육적 보육에 대한 국가 지침에서 가정보육사에게 요구하는 바가 적다. 또한 국가 지침은 모든 보육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가치 체계를 담고 있지 않다. 국가 지침은 교육적 보육이 특히 중요한 지역들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 지침은 교육적 보육의 기능을 개별 아동의 욕구에 반응적이며, 아동의 보호, 발달 및 학습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영향력과 책임을 많이 강조한다(Mooney & Statham, 2003).

2.2.2 전달체계

교육적 보육의 운영방법에 대한 결정 권한은 상당 부분 지자체에 있다. 교육적 보육을 시설보육이 부족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임시적인 서비스 형태로

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보육 대안으로 간주하여 부모에게 보육과 관련된 몇 가지 선택권(교육적 보육을 포함하여)을 보장하는 곳도 있다(Mooney & Statham, 2003). 예를 들어, 솔라(Solna) 지자체에서는 교육적 보육을 주로 1~5세를 대상으로 가정 같은 환경에서 소집단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지자체에서 가정/교육적 보육은 오전 6시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 탄력적으로 10시간 운영되며, 크리스마스 이브, 신년 이브, 미드섬머 이브 등의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을 지침으로 활동을 구성하며, ‘솔라 지자체의 공립 및 사립 프리스쿨과 교육적 보육 규칙’이라는 안내서(Solna Stad, 2017)에서 교육적 보육을 프리스쿨과 동등한 보육 유형으로 다루고 있다.

지자체는 가정보육사가 주당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규정한다. 한명의 가정보육사로부터 돌봄을 받아도 충분한 아동도 있지만, 지자체가 허용한 시간보다 더 많은 보육시간이 필요한 아동도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정보육사가 하루 쉴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고용한다. 혹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다른 가정보육사에게 가서 돌봄을 받거나, 다른 아동들이 일시적으로 합류하는 경우도 있다(Mooney & Statham, 2003).

2.2.3 보육료

지자체는 공보육 체제 내에서 교육적 보육의 보육료를 지원한다(skolverket, 2022b). 지자체가 가정보육사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부모는 지자체에 보육료를 납부한다(Kerstin, 1991). 지자체는 부모에게 합리적인 보육료를 부과한다. 보육료 상한제의 채택 여부는 지자체의 자유이지만,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보육료 상한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교육적 보육의 보육료는 정부가 규정한 상한선 내에서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나까(Nacka)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용시간(주당 1~15시간, 16~25시간, 26~35시간, 40시간 이상)을 세분화하여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Nacka Kommun, 2022). 이에 비해 솔라(Solna) 지자체의 경우 소득 대비 비율 금액과 고정 금액 중 가족에게 유리한 금액을 보육료로 책정한다. 파트

타임(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 <표 1>에 제시된 금액의 75%를 지불하면 된다. 솔라(Solna) 지자체의 보육료 산정은 <그림 1>과 같이 이루어진다.

<표 1> 솔라 지자체의 보육료 상한제

	소득 대비 비율	고정 금액(상한)
첫째 자녀	3%	SEK 1,425
둘째 자녀	2%	SEK 950
셋째 자녀	1%	SEK 475
넷째 자녀	0%	무료

<그림 1> 솔라 지자체의 보육료 계산 프로그램

출처: 솔라 지자체 홈페이지. <https://www.solna.se>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스웨덴 예테보리 지자체의 교육적 보육 관련자로 구체적으로는 가정보육사, 교사, 교수, 공무원 등이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피면접자	소속	직위
P**	예테보리 코문 유아 행정부서	지방직공무원
S**	예테보리 대학교	전직교수
M**	예테보리 대학교	교수
Y**	가정보육	가정보육사
A**	가정보육	가정보육사
C**	가정보육	가정보육사
H**	예비	보조교사
E**	전직	유아교사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 예테보리 지자체에서 교육적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 교육적 보육의 지역모임 장소 등을 참관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면접 자료는 서울시 용역과제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 시스템 연구」 수행을 위해 스웨덴 현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집되었다. 기관 섭외와 통역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와 스웨덴 한인회, 그리고 한국 스칸디나비아 학회의 도움을 받았으며, 면담은 2019년 8월 11일에서 8월 16일까지 6일 동안 이루어졌다. 면접 문항은 면접대상자에게 3~7일 전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면접 시 양쪽 언어에 능통한 통역자를

동반하였다. 면접 내용은 그 즉시 한국어로 기록하는 동시에 녹음 후 전사하여 두 자료를 크로스 체크(cross-check)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주의 깊게 읽으며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파악하고 식별하여 표기하였다. 연구 결과는 스웨덴 교육적 보육의 일반적 특성 및 실체가 기술될 것이므로 표기된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이러한 특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면담 사례를 추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스웨덴 교육적 보육의 일반적 특성

4.1.1 교육적 보육의 특성

4.1.1.1 교육적 보육의 개념

교육적 보육은 프리스쿨과 레저타임센터의 대안으로 가정보육사가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형태, 즉 전통적인 가정보육을 의미한다. 현재 교육적 보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가정보육사가 자택에서 교육적 보육을 제공하는 유형, 특정 공간에서 한 명 이상의 가정보육사가 모여 교육적 보육을 제공하는 유형, 아이들이 교대로 다른 가족의 집이나 특정 공간에 모여 교육적 보육을 제공받는 다중 가족 솔루션, 회사 형태로 원장 개인이 가정보육사를 고용하되 보육사의 집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스웨덴의 교육적 보육은 비형식적 보육 유형으로서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보육을 의미한다(skolverket, 2022b).

프리스쿨의 조건은 대학교육을 받은 전공자가 있어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문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가정보육은 이러한 조건이 필요 없어요. 저는 언어학 전공자로 아이들과 오래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속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은 공간을 빌려서 12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주 1일 정도 도와주기도 합니다.

(가정보육사 A 면담)

4.1.1.2 교육적 보육의 이용자

교육적 보육은 프리스쿨보다 적은 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연령층은 프리스쿨이나 레저타임센터 아동을 포함하는 1~12세이다(Naumann et al., 2013). 이는 같은 북유럽이지만 3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노르웨이나 덴마크의 가정보육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Mooney & Statham, 2003). 과거에 비해 이용자가 급속히 감소했지만 집과의 거리가 가깝고, 소규모 운영을 통해 특별한 관심과 돌봄을 받을 수 있고, 혼합연령 운영으로 형제-자매 관계를 경험할 수 있고, 집과 비슷한 구조와 분위기를 갖고 있으며, 가정보육사가 이웃이라 믿을 만하고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고, 여러 교직원이나 가정보육사 1인만 대하면 된다는 것 등을 이유로 여전히 교육적 보육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있다(한유미 외, 2005; Mooney & Statham, 2003). 이와 같이 교육적 보육은 특별한 이유로 소규모 양육이 필요하거나 인근에 프리스쿨이 없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보육유형으로서, 프리스쿨 및 유아학급 그리고 레저타임센터의 대안적 기능을 한다.

지금은 아이들이 좀 많아졌지만, 원래는 6명의 아이가 있던 소그룹 가정보육이었어요. 제가 프리스쿨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를 선택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식재료나 간식도 유기농만을 사용하고 프리스쿨보다 밖에서 노는 시간이 많아요. 저는 이 나이 때에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아기에 공부를 많이 한 아이가 학교에 가서는 늦게 발달한다는 것을 읽었거든요. 이 나이 때에는 학습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8개월 된 아들도 나중에 여기에 맡길 것이에요.

(이용부모 A 면담)

교육적 보육은 연중 종일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모든 아동이 종일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아동 마다 이용 시간과 이용 시간대는 각기 다를 수 있

다. 주말, 저녁, 밤 등의 시간에도 부모의 스케줄에 따라 운영 시간이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 있다(한유미 외, 2005; Mooney & Statham, 2003). 이와 같이 교육적 보육은 아동이 어리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다는 이유로 보육에서 제외되지 않고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아무래도 가정보육은 프리스쿨만큼 체계적이지 못하죠. 그런데 요즘 이 혼술도 높고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가정사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가정보육을 찾는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프리스쿨은 운영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데, 가정보육은 부모랑 친밀하고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는 시간에 융통성이 있거든요.

(보조교사 A 면담)

4.1.2 가정보육사의 특성

4.1.2.1 가정보육사의 유형

가정보육사(dagbarnvårdare)는 취업모의 증가에 따라 자기 집에서 이들의 자녀를 돌보아줌으로써 시설보육의 부족을 해결하면서 생겨난 직종이다(Korpi, 2016). 가정보육사도 작업팀의 일원으로 프리스쿨에서 일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교육적 보육을 제공한다. 가정보육사는 지자체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대신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는 ‘공립 가정보육사’와 지자체의 인가를 얻지만 관리·감독이나 공적 규제는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립 가정보육사’로 나누어져 있다(김은설, 안재진, 최윤경, 김의향, 양성은, 김문정, 2009). 사립 가정보육사보다는 공립 가정보육사로 일하는 비율이 훨씬 많지만, 시설 중심 보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립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Naumann et al., 2013). 다음 면담과 같이, 가정보육사들은 사립보다 공립 가정보육사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처음 가정보육사로 일할 때에는 지자체에 고용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했어요. 그때에는 제가 직접 아이들을 모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
다. 그러다 신문 광고를 보고 공립 가정보육사를 신청했어요. 공립 가정보

육사가 되면 지자체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가서 엄마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국인 이름이라 엄마들이 잘 클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정보육사 B 면담)

가정보육사는 시설보육 종사자들에 비해 연령이 높은 경향이 있지만, 가정보육사들의 연령, 경력, 연수, 학력 등의 배경이 다양하며 근무 조건, 근무 시간, 보육 아동 수, 수퍼비전의 접근성 등에서도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Mooney & Statham(2003)의 연구에 참여한 가정보육사들의 가정보육 근무 경력은 3.5년에서 30년까지로 다양했고, 각기 다른 직업(주로 저임금의 보호업무) 경력이 있었다. 일부 가정보육사는 시설보육 근무 경험도 있었다. 드물게는 유아교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는 보조교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가정보육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그마마(가정보육사)는 외국인 특히 무슬림이 많습니다. 저는 이라크 출신인데, 2살부터 스웨덴에 와서 살아서 스웨덴어는 잘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에 사립 프리스쿨에서 일한 적이 있긴 해요. 동료 중에 레바논에서 온 가정보육사는 문자언어 능력이 부족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가정보육사 C 면담)

4.1.2.2 가정보육사의 직전 교육 및 현직 교육

가정보육사는 학위나 자격증 등 공식적인 자격 요건은 없으나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요건은 지자체가 결정하는데, 대부분 일정 기간 지자체가 지정한 훈련을 받으면 자신의 집에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다(Davis et al., 2012). 자격 취득을 위해 보조교사 교육과정이 권고되고 있으나 정부 수준에서의 특별한 지원이나 의무사항은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90~100시간의 훈련 이외에 연간 30시간의 연수를 권유할 뿐 실제로 가정보육사를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공식 훈련과정은 없다. 자격을 갖춘 가정보육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아동보육과 관련된 훈련과정이나 보조교

사 교육을 받고 있다(김은설 외, 2009).

프리스쿨에는 대학교육을 받은 전공자(유아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적 보육에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가정보육사 A 면담)

가정보육사가 받아야 할 현직 교육은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다. 다른 보육 종사자들과 동일한 양의 현직교육을 받아야 하는 곳도 있고, 현직교육을 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다(Mooney & Statham, 2003). 대부분 공식적으로 동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종종 프리스쿨에서 교직원과 협력하여 일하며 다양한 현직교육에 참여한다(Davis et al., 2012).

예테보리에서 3년 일한 후 중급과정(1년 과정) 연수를 받았습니다. 원장이 지자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보내주었는데, 일주일에 4일은 일하고, 하루는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현직에 있으므로 실습은 따로 안했습니다. 교육은 대학이나 직업학교에서 하는데, 사진 강좌도 들었고 2018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세미나도 이수했습니다. 20명이 수업을 받았고, 이중에 30년 경력자가 있었는데, 자신은 더 배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배운 것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보육사 B 면담)

4.2 스웨덴 교육적 보육의 운영 실제

4.2.1 교육적 보육의 교육철학

가정보육사의 배경이나 근무 조건과 무관하게 교육적 보육에서 아동의 일과는 전반적으로 유사하며(Mooney & Statham, 2003), 교육적 보육과 시설보육의 일과 활동은 차이점보다 유사성이 더 많다(Kerstin, 1991). 예컨대 아동에 대한 책임의 양, 아동이 유용한 것을 만드는 빈도, 학교 준비, 조용히 앉아서 하는 학습, 아동의 게임에 대한 성인의 참여 양 등의 측면에서 시설보육

과 교육적 보육은 차이가 없다. 이는 보육이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는 스웨덴 가족정책의 기조에 따라 보육의 질 관리에서 동질성이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적 보육은 시설보육에 비해 소규모이고 대개 가정보육사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성인과 아동의 상호작용 측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설보육에서는 교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고 혼자서 아동에 대해 책임을 갖는 시간이 적은 반면, 교육적 보육에서는 가정보육사가 소집단 아동을 혼자 돌보는 시간이 많다. 또한 교육적 보육 이용 부모들은 아동을 ‘부모와 사회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로 보는 관점과 ‘있는 그대로의 아동’으로 보는 관점 중에서 후자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즉 이들은 자신만의 발달과 학습의 추진 동력을 갖고 있으므로 성인은 지원자로서의 역할만 필요하다고 믿는 것이다(Karlsson, 1994). 이와 같이 교육적 보육은 아동을 어떠한 형태로 형상화할 수 없다는 교육철학 하에, 아동을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너무 많은 활동을 강요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왔다(Mooney & Statham, 2003). 따라서 Annerblom(1991)의 지적과 같이, 스웨덴 교육적 보육은 고유한 교육철학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nerblom의 연구에 참여한 스웨덴 교육적 보육 관련자들은 총체적인 아동관과 아동에 대한 태도 등에 있어 공통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다. 즉, 스웨덴 가정보육사들은 아동의 정서발달에 우선권을 두며, 아동의 안전에 대한 욕구, 고유한 개성에 관한 권리, 아동 자신이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보육사들이 명확한 교육철학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인 엄마/주부의 역량과 시설보육의 교육적 전통이 혼합된 덴마크(Nielsen, 1997), 또는 시설보육의 관행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만의 접근법과 에토스의 개발이 필요한 노르웨이(Abrahamsen & Mörkseth, 1988)와 대조를 이룬다.

4.2.2 집단 활동 및 수퍼비전을 통한 질 관리

교육적 보육의 장소가 일반적으로 가정보육사 자신의 집이지만, 늘 이곳에

서만 보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정보육사들은 지역 가정보육사 집단의 일원으로서, 최소 1주일에 한 번은 오픈 프리스쿨이나 공원 또는 지정된 건물에 서로의 보육아동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낸다. 이 때에는 대개 노래 부르거나 춤추기, 미술 또는 색칠하기와 같은 조용한 활동과 같이 미리 계획된 활동을 한다. 가정보육사들이 아이들을 나누어 돌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정보육사가 나이든 아이들을 소풍에 데려가고, 다른 가정보육사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실내에 남는다. 이러한 모임은 가정보육사들에게는 긴밀한 협력의 기회를, 아동에게는 많은 친구를 사귄 기회를 준다(Mooney & Statham, 2003). 그러나 다음 사례와 같이, 환경 상의 문제로 이러한 모임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된다.

저는 수, 목, 금은 아이들을 돌보지만 월, 화, 이들은 여기로 아이들을 데려 옵니다. 평균 16~17명 정도가 모여요. 보시다시피 만지하이고, 환경(거실, 주방, 방, 화장실 각 1개)도 열악한데다가 거리도 좀 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여기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도 있어요. 아이들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노는 가정보육사도 있지만, 실내에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그냥 앉아있는 가정보육사도 있지요.

(가정보육사 B 면담)

오늘은 아이들이 3명만 있지만, 지난 학기에는 12명이 있었습니다. 저와 가정보육사 B 둘 중 한 사람이 아이들 12명을 돌보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원장이 지자체를 옮기면서 저를 여기로 데리고 왔는데, 전에 있던 곳에서는 가정보육사만 18명이었고, 아이들도 많아서 큰 아이와 작은 아이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청소원도 따로 있었고 화장실도 2개였는데, 여기는 너무 작아요. 겨울에는 춥고.

(가정보육사 C 면담)

모든 가정보육사에게 슈퍼바이저가 있지만, 슈퍼바이저의 업무 또한 차이가 많다. 수백 명의 가정보육사를 관리하는 슈퍼바이저가 있는가 하면, 가정보육사 몇 명만을 담당하고 다른 업무를 더 맡는 슈퍼바이저도 있다.

우리 원장(수퍼바이저)는 프리스쿨을 하나 운영하면서 가정보육사 8명을 관리합니다. 체크만 하고 기본 운영은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가정보육사를 6년 했는데, 방문 관리가 힘들어서 인지 그동안 원장이 6번 바뀌었어요. 이제는 프리스쿨은 안 맡고 가정보육사들만을 관리하는 원장이 올 것입니다.

(가정보육사 B 면담)

이외에도 교육적 보육은 프리스쿨보다는 훨씬 강도가 낮지만 다음 <표 3>과 같이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다.

지자체에서 감독을 하는데, 교육위원회, 환경위원회, 식약감사부 등 세 부처에서 오세요. 예고 없이 오실 때도 있고, 환경이 바뀔 때 마다 꼭 오십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숫자가 증가하거나 가정보육 시설을 바꿀 때 오시지요. 감사를 대략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가정보육사 A 면담)

<표 3> 감사를 통해 점검받는 서비스의 질 측면

	교육적 보육	프리스쿨	한국
교사대아동비율	○	○	○
실내외 공간		○	○
건강과 위생			○
안전	○	○	○
학습과 놀이 자료		○	○
교직원의 자격	○	○	○
활동 계획		○	○
근무조건 (직무만족, 이직율, 급여, 업무부담)			○
교육과정 실행		○	○
인적자본관리(교사공급 등)			○
재정 관리	○	○	○

출처: OECD. (2015). Starting Strong IV, pp. 90-91.

노르웨이와 덴마크에 비해 스웨덴의 교육적 보육은 규제와 수퍼비전이 더 적다.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는 가정보육사가 정기적으로 수퍼바이저의 방문을 받는 반면, 스웨덴 가정보육사는 이따금 수퍼바이저를 만난다. 대신 스웨덴 가정보육사들은 자체 모임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았다. 동료 간의 토론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Dahlberg, Moss, & Pence(1999)의 주장을 비추어 볼 때 스웨덴 교육적 보육에서는 오히려 수퍼비전의 부재가 가정보육사들을 서로 더 긴밀하게 일하도록 만들고,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발달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즉, 상호 도움과 경험의 교환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식적 지원과 수퍼비전이 많을 때보다 가정보육사들은 좀 더 능동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발전시키고, 자신의 업무의 질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다. 이는 가정보육사들이 고유한 교육학을 개발할 때 시설보육의 경험을 가진 수퍼바이저들이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가정보육사들은 자체 모임을 통해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전문가적 태도와 교육학을 만드는 중요한 단계로 가정보육사들을 성장시킨다. 물론 가정보육사들에게 공식적 훈련과 지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현직 연수 및 지원과 결합된 집단 모임을 통한 가정보육사들 간 협력의 발달이 교육적 보육의 질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육 일변도인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시 하는 스웨덴의 교육적 보육을 소개함으로써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소규모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가정보육으로 불리던 교육적 보육이 먼저 일반 보육의 역사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적 보육의 개념 및 이용자들의 특성, 관련 법규 및 전달체계, 보육료 등의 행·재정, 교육적 보육이 갖고 있는 교육철학 및 질 관리를 중심으로 한 운영 실제 등을 소개하였다.

먼저, 연구결과 스웨덴의 교육적 보육은 UN 아동권리협약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보육은 부모가 취업이나 학업 중에 있는 1~12세 아동이 이용하는 비형식적 기관으로, 지자체가 보육료를 지원하며, 아동이 어리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다는 이유로 보육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준다. 또한 교육적 보육은 스웨덴 유보통합의 역사 속에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내포된 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적 보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인권을 증진하고 모든 형태의 학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다(skolverket, 2022b). 교육적 보육에서는 ‘아동 최우선의 원칙’뿐 아니라 ‘무차별의 원칙’도 적용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21)의 UN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1호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차별은 부적절한 보살핌이나 관심, 학습과 교육 기회의 제한, 자유로운 표현의 금지, 비이성적인 기대, 가혹한 대우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무차별은 어떤 형태의 차별도 금지해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황옥경, 2018), 교육적 보육에서는 아동의 다양한 환경과 상황 차이를 존중하여 여러 유형의 운영 형태 적용, 취학전·후 아동을 포괄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보육 받을 권리를 실현시켜준다.

이와 같이 아동권리 관점에 입각한 스웨덴 교육적 보육이 우리나라 보육 및 가정어린이집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 교육적 보육은 공보육의 역사와 함께 발달해 왔으며, 시설보육보다 아동 권리에 부합하는 보육유형이라는 인식을 통해 정부 및 보육정책 담당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받아왔다. 이는 현재 시설보육에 초점을 두고 보육정책을 펼쳐 온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가들이나 시설보육을 선호해 온 부모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웨덴의 시설보육 대상 연령은 1세 이상으로, 1세 미만의 영아는 서비스 이용 권리를 갖지 않는다(skolverket, 2022c). 신체, 정신, 기타 이유로 발달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보육을 이용할 수 있으나, 16개월 미만 아동은 부모의 육아휴직제도 등으로 인해 시설보육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육아정책연구소, 2015). 이는 아동기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이 시설보육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부모지원(육아휴직, 직장방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하였으며(육아정책연구소, 2006), 교육적 보육과 같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시설 외 보육을 선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스웨덴 교육적 보육의 전신인 가정보육과 명칭 및 태생, 규모 등이 가장 유사한 것은 가정어린이집이다. 스웨덴 가정보육은 교육적 기능만 강화되었을 뿐 규모는 그대로인 반면, 우리나라 가정어린이집은 소규모의 놀이방에서 시작하여 20명 정도의 작은 시설보육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부모들이나 보육정책 입안자들이 소규모의 가정보육보다는 시설보육이 보육의 질이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류영희, 김인, 2021). 전통적으로 아동은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이 있었고, 심지어 공보육의 확장 시기에도 가정보육(현. 교육적 보육)과 시설보육에 관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스웨덴의 사례를 거울삼아 시설보육 일변도의 보육정책 패러다임을 반성하고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스웨덴 ECEC의 주무부처는 보건사회부였으나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부로 이관, 교육과 일원화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가정보육의 명칭 또한 교육적 보육으로 변경되었다. 스웨덴 교육적 보육은 교육부의 관할을 받고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내포된 교육법에 따라 아동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및 시설을 운영·관리한다(skolverket, 2022b). 이에 비해 우리나라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가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1991)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정어린이집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적 기능이 취약하다는 인식 때문이며, 보육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질적인 영아보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의 교육과정 및 시설 운영·관리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호가 아닌 보육 즉, 교육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단순히 보호를 넘어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법 안에서 교육적 보육으로 명칭을 바꾸고 교육적 기능한 강화한 스웨덴은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

셋째, 과거에 비해 스웨덴에서도 교육적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충족하고 개별 아동에 대한 배려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공보육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가족의 구조나 부모의 근무 형태, 자녀의 연령 등 특성, 거주 지역 및 지역의 보육시설 현황 등에 따라 부모는 자녀 및 가족의 욕구에 가장 부합하는 보육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스웨덴의 교육적 보육은 ECEC와 학교 체제의 보충적인 개념의 육아지원 서비스로 대부분은 교외지역이나 도심에서 벗어난 작은 마을에 밀집해 있으며,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06; skolverket, 2022b). 또한 교육적 보육은 장소, 아동 그룹의 구성과 규모,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가족의 구조나 부모의 근무 형태, 거주 지역 및 지역의 보육시설 현황, 자녀의 연령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은 24시간보육이나 휴일보육 운영기관에서 제외되며, 야간연장보육 및 시간제보육, 방과후보육은 아동수, 보육시간, 전담교사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다. 이에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 등록 유아 비율은 6.27%이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도 8.38%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20). 가정어린이집 등록 유아가 낮은 이유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가정어린이집만의 장점을 활용하기보다는 단지 설립 유형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규모만 작게 운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변화에 따라 보육 수요자의 요구도 다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수요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 유형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스웨덴과 같이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펼친다는 차원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스웨덴은 가정보육사의 양성뿐만 아니라 연수, 교사네트워크, 슈퍼바이저 컨설팅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가정보육사의 질 관리와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스웨덴 가정보육사는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 일정 이상의 학위나 자격증 등 공식적인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기타 요건을 제시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일정 훈련을 받으면 자신의 집에서 교육적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Davis et

al., 2012). 이는 동일 연령을 담당하지만 기관유형이 다른 프리스쿨 및 유아 학급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전공자를 교사 자격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교육적 보육의 운영 철학 및 특징을 고려하여 가정 보육사의 질 관리 및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웨덴의 교육적 보육은 개별 보육사의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역의 보육사들과 보육아동들이 한 장소에 모여 집단 활동을 한다. 이는 아동에게는 보다 다양한 ‘놀 권리’를 제공하고, 가정보육사에게는 고립된 근무로 인한 직업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등의 복지 증진뿐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한 자발적인 전문성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의 가정보육사들의 모임인 가정보육사연합회 제도는 스웨덴뿐 아니라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헝가리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정보육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과 훈련은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국가에서만만 구체적인 인가 조건을 마련하고, 개별 가정보육사들이 지역 네트워크 또는 지역보육사연합회에 소속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연합회들은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재정지원을 받으며 가정보육사들의 전문성 교육과 질 향상을 책임지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교육권 증진으로 이어진다(OECD, 2006). 우리나라 가정어린이집 교사는 국가자격증인 보육교사 3급을 최소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강의 형태의 보수교육 및 위생·안전 관련 의무교육을 제시하고 이를 이수하도록 함으로서 보육교사의 질 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보육교사 교육원, 2022). 그러나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방법을 모색하여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아동권리 관점에서 스웨덴 교육적 보육이 갖는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자칫 보육의 질이 낮을 것으로 인식되어 부모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기피되어 오던 가정어린이집의 질이 향상되고, 맞춤형 보육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확립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본 연구결과가 시설보육과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한 가정어린이집의 컨설팅 및 자체 모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21).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서울: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 김은철, 안재진, 최윤경, 김의향, 양성은, 김문정(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
- 나원정, 장민영, 이승연(2015). “유아의 참여 및 참여권에 대한 고찰”. 『어린이미디어연구』, 14(4), 307-339.
- 류영희, 김인(2021). “보육서비스 수준 및 학부모 만족도 영향 요인: 시설 유형 및 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5(3), 51-79.
- 박범천(2022.7.5.). “경기도의회, ‘가정어린이집의 현실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e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0=202207042320299730528>
- 보건복지부(2020). 『보육 통계』.
- 보육교사 교육원(2022). “보육교직원 연간교육”. <https://boyuk.eseoul.go.kr/education/main.do>
- 신동주(2006). “스웨덴 유아교육제도”. 『유아교육연구』, 26(5), 79-92.
- 신동주(2015). “노르딕국의 ECEC제도 연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9(5), 73-99.
- 양옥승(2014). “통일대비 미국, 중국, 독일, 스웨덴의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 분석”. 『유아교육연구』, 34(6), 585-597.
- 육아정책연구소(2006). 『스웨덴 육아정책 동향』. 서울: 도서출판 한학문화.
- 육아정책연구소(2015). 『핀란드의 육아정책(II)』. 서울: 경성문화사.
- 이신영(2015). “스웨덴 숲유치원의 운영 현황과 국내 숲유치원의 발전 방안”. 『어린이미디어연구』, 14(4), 73-93.
- 이은경(2018). 『보육교사의 유아권리인식과 유아권리존중실행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유미(2006). “육아지원정책에 따른 가정보육시설의 운영방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1), 23-37.

- 한유미(2009). “보육바우처 도입의 과제 :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3(1), 33-57.
- 한유미(2010). “스웨덴의 보육바우처: 나까 지자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바우처 전문가 간담회발표 자료. 서울: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한유미(2013). “스웨덴과 핀란드의 공보육 제도”. 『스칸디나비아 연구』, 14, 181-214.
- 한유미, 오연주, 권정윤, 강기숙, 백석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서울: 학지사.
- 황옥경(2018). “아동권리관점에서 본 유아기 영어교육논쟁”.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45-59.
- Abrahamsen, G., & Mørkseth, E. I. (1988). *Roller och relasjoner I familjebarnchagen. Enstudie av kvalitet I familjebarnchagen for barn under tre år. [Roles and relations in family day care. A study of quality in family day care for children beyond age of three]*. Tidvise Skrifter. Samfunn og helse. Stavanger: Høgskolen I Stavanger.
- Annerblom, M. L. (1991). *Kvinnotradition I focus. [Focus on the tradition of women]. Pedagogisk-psykologiska problem 556*. Institutionen för pedagogik och specialmetodik, Malmo: Lärarhögskola i Malmö.
- Bennett, J., & Kaga, Y. (2010).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Systems within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4(1), pp. 35-43.
- Broström, S., Sandberg, A., Johansson, I., Margettsd, K., Nylande, B., Frøkjær, T., Kieferleg, C., Seiferth, A., Rothi, A., Ugastej, A., & Vrinotik, K. (2015). Preschool teachers' views on children's learning: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5(5), 824-847.
- Dahlberg, G., Moss, P., & Pence, A. (1999). *Beyond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stmodern Perspectives*. London: Falmer Press.
- Davis, E., Freeman, R., Doherty, G., Karlsson, M., Everiss, L., Couch, J., Foote, L., Murray, P., Modigliani, K., Owen, S., Griffin, S., Friendly, M.,

- McDonald, G., Bohanna, I., Corr, L., Smyth, L., Morkeseth, I., Morreaunet, S., Ogi, M., Fukukawa, S., & Hinke-Rahnau, J. (2012).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regulated family day care systems. *Journal of 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37(4), 127-137.
- DICE Database. (2005). Childcare Services. Ifo Institute, Munich, online available at <http://www.cesifo-group.de/DICE/fb/MU8t5>
- Ellen, K. (2021). 『어린이의 세기 ((Das)Jahrhundert des Kindes)』. (정혜영 옮김).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 (원서 1900년 출판).
- Gunnarsson, K., & Nofdenstam. (1999).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Sweden*. OECD.
- Jönsson, I., Sandell, A., & Tallberg-Broman, I. (2012). Change or paradigm shift in the swedish preschool? *Sociologia, Problemas e Práticas*, 69, 47-61.
- Karlsson, M. (1994). *Varför föräldrar väljer familjedaghem. [Why parents choose family day care]*. FoU-Rapport 1994: 9. Stockholm: FoU-byrån.
- Kerstin, E. P. (1991). Quality Aspects of Swedish Family Day Care and Center Care.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345829.pdf>
- Korpi, B. M. (2016). *The Politics of Preschool: intentions and decisions underlying the emergence and growth of the Swedish preschool*. Stockhol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ooney, A. & Statham, J. (2003). *Family day care: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policy, practice and quality*. London & NY: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Nacka Kommun. (2022). 유아학급, 유아 교육 및 보육,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요금. <https://www.nacka.se>
- Naumann, I., McLean, C., Koslowski, A., Tisdall, K., & Lloyd, E. (2013).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rovision: international review of policy, delivery and funding*. Final report dera.ioe.ac.uk Centre for Research on Families and Relationships The University of Edinburgh Scottish Government Social Research.

- Nielsen, L. (1997). *Dagplejen I dag og I morgen [Family day care today and tomorrow]*. Vejle: Kroghs Forlag A/S.
- OECD. (2006). *Starting strong II*. Paris: OECD.
- Pestoff, V. & Strandbrink, P. (2002). The politics of day care in Sweden. *CRIDA conference paper*. Milan.
- Skolverket. (2000). *Pre-school in transition: National evaluation of the Swedish preschool*. Stockholm: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 Skolverke. (2022a). 학교법 및 아동권리협약.
<https://www.skolverket.se/regler-och-ansvar/barnkonventionen>
- Skolverket. (2022b). 교육적 보육. <https://www.skolverket.se/regler-och-ansvar/ansvar-i-skolfragor/pedagogisk-omsorg>
- Skolverket. (2022c). 취학전 권리. <https://www.skolverket.se/regler-och-ansvar/ansvar-i-skolfragor/ratt-till-forskola>
- Solna Stad. (2017). Rules for municipal and independent preschools and pedagogical daycare centres in Solna municipality.
<https://www.solna.se/Global/F%C3%B6rskola%20och%20skola/Central%20of%C3%B6rvaltning/Regler%20och%20rutiner%20BUN/Rules%20for%20municipal%20and%20independent%20preschools%20.pdf>
- UNICEF. (2022). 아동권리협약.
<https://www.unicef.or.kr/about-us/unicef/mission/convention-on-the-rights-of-the-child>

<Abstract>

A Study on Swedish Pedagogical Care from a Children's Rights Perspective

Han, You Me*

Kim, Hee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vitalization of small-scale childcare, including home childcare center, by introducing Sweden's pedagogical childcare, which prioritizes children's rights, in Korea, which is largely dependent on institutional childcare. To this end, literature research, field visit to Sweden, and expert interview were conducted.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and development of pedagogical childcare, which has been called family daycare for a long time, in the history of general childcare; the concept of educational childca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users;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e system including related laws, regulations and delivery systems and childcare fees; and practices focused on educational philosophy of pedagogical childcare and quality management through supervision and self-help groups were introduced. It was found that pedagogical childcare has characteristics such as securing a position as a public childcare, strengthening educational functions reflected in the recent name change, and operating services that prioritize children's rights. The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nd home childcare operators were discussed: reflection on the institutional childcare. policy paradigm, urging childcare polic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putting children' rights first, promotion of

*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ersity.

**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bok University.

consumer-oriented childcare policies, and providing supervision and support for self-help groups differentiated from institutional childcare.

Key Words: children's rights, family day care, pedagogical care, Sweden, child-minder

성명: 한유미(Han, You Me)
소속: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E-mail: hanym@hoseo.edu

성명: 김희영(Kim, Hee Young)
소속: 경북대학교 유아교육과
E-mail: heeiz000@kbu.ac.kr

논문 접수일: 2022.10.31.
수정원고 접수일: 2022.12.10.

논문심사 완료일: 2022.11.28.
게재 확정일: 2022.12.10.